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606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53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06.1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2	1022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06.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3	10174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04.2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2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2. 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2. 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

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 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지방법원·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

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 ----- -----.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u>구제된</u> 곳 또는 <u>구제된</u>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 <u>구조</u> ----- <u>조</u> ----- <u>구조</u> ----- -----.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u>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u>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 ----- ----- ----- <u>지식재산권에</u> ----- ----- -----

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신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
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
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
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
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
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
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
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
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
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지방법

<신 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원·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과 관련 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
-----지식재산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신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②
(생략)

<신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63조(관할법원) (생략)

<신설>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관할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
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
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
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
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
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
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
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
이 있다.